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6일, 김건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1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 기재

현행법 제7조제6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5. 2. 17. 시행 예정임.

이용우의원안, 김건의의원안 및 이수진의의원안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기식별번호 외에 배터리의 제조사, 구성물질, 용량 등의 세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재내용으로 이용우의원안은 배터리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건의의원안은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이수진의의원안은 배터리 제조사를 기재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들에 따른 기재사항 비교표 >

구 분	개정안에 따른 등록원부 추가 기재내용	비고
이용우의원안	배터리 식별번호,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김건의의원안	배터리(전기공급원) 제조사, 상품명	
이수진의의원안	배터리 제조사	

개정안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구동축전지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기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의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9. 10 ~10. 21)를 진행하고 있고,

개정안들의 내용 중 배터리의 상품명, 제조일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입법예고 중인 시행규칙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상품명(제품명)의 경우 제작사가 부여하는 관리번호 등으로 소비자에 공개할 필요가 낮다는 의견이 있고, 제조일자에 대해 제조사는 배터리 셀, 모듈, 팩 제조 단계별로 상이하며, 동일 배터리 팩 내부에 제조일자가 다른 셀이 탑재되는 경우도 있어 셀 배터리 제조일자까지 기재는 어렵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